

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26. 7.

제 출 자 : 하남시장(주택

과)

1. 제안이유

- 2008년 「상업등기법」 및 「상업등기규칙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종이 형태의 등기부를 기초로 한 ‘등·초본’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‘등기사항증명서’로 변경하여 등기기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.

이에 따라, 조례상 용자신청 시 첨부해야할 서류 중 ‘법인등기부등본’을 ‘법인등기사항증명서’로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‘법인등기부등본’을 ‘법인등기사항증명서’로 개정함(안 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기금의 재원, 용도 등 관련한 근거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, 관련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